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

성 북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번호	24
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8. 25.
제안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및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“2026년도 제2차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”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특별위원회 명칭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
 - 위원회 구성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
- 특별위원회 존속기간: 구성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- 심사안건: 2026년도 제2차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
- 심사방법: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·답변,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심사

3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제64조, 제145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7조, 제38조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2. 예산의 심의·확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

제28조(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3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예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③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④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